졸업인증제 시행 규정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 4호 학교가 정하는 졸업인증제 통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대상)** 졸업인증제는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체육특기자, 외국인학생, 학사편입생, 북한이탈주민, 계약학과 학생, 장애 1~3급인 학생(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자)는 제외한다.
- **제3조(인증자격)**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다전공인증, 심화전공인증, 현장실습인증, 외국어인증, 독서토론 인증, KGU⁺인증으로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며, 이중 2개 분야의 인증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 각 분야별 졸업인증 취득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(별표 1)과 같다.
- 제4조(인증절차) ① 제3조의 자격요건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통과로 인한 외국 어인증과 KGU⁺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학교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성적표 및 비교과 활동증명서를 첨부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 4/4선 이후 1개월 이내까지 해당 단과대학에 제출하여 야 인정한다.
 - ② 단과대학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매 학기말에 심사결과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한다.
- 제5조(학칙의 준용)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 단,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[별표1](신설 2017.3.1.)

졸업인증제 자격 요건

- 6개 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각 영역별 1개 이상의 이수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
영역	이수자격	비고
심화전공인증	 주전공을 8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공학인증 또는 건축학인증을 이수한 자 	
다전공인증	• 복수전공, 부전공, 교직, 학생군사교육단 과정 중 1개 이상 이수한 자	
현장실습인증	우리대학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6학점이상 이수한 자 (국제교류팀에서 실시하는 해외현장실습은 KGU ⁺ 인증과 중복인정 불허)	
외국어인증	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시험 기준통과자 (표1 참고) 대학영어 1,2,3,4,5(총15학점) 이수자 	
독서토론인증	 교양교육과정에 있는 독서토론1,2,3,4,5,6(총18학점) 이수자 	
KGU ⁺ 인증	 비교과프로그램 140포인트 이상 취득 비교과프로그램 중 커리어개발형 만으로 140포인트 이상 취득할 경우 직무역량인증으로 인정 	

<표1-외국어인증 공인어학시험 통과기준 표>(신설 2017.3.1.)

구분	TOEIC	TOEFL	TEPS	NEAT	TOFIC Speaking	Opic	JPT (일)	JLPT (일)	ZD (독)	DaF (독)	DELF (프)	HSK (중)	TORFL (러)	FLEX (러)
일반 학과	650	70	520	200	level 5 120	IL	600	2급	통과	3등급	통과	5급(신) 6급(구)	1단계 이상	2급 B이상
관광 대학	700	79	555	220	level 6 140	IM2								